의정활동보고서

제218회 임시회(2007. 10. 4 ~ 10. 16)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민심을 살피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정활동에 바쁘셨줄 압니다만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키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전에 태풍 『나리』와 『위파』가 우리지역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서리와 우박으로 인한 피해 속에서도 농민들이 정성들여 가꾸어 온 들녘을 보면서 흐뭇한 느낌이 듭니다만 수확 후 판로와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시·도지사 협의회 한미 FTA특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어업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17회 임시회 개원시 전 도의원이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 발전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 하였습니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계류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9%로 이대로 간다면 2011년 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국가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이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도 혁신도시 건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육정책이 인구 이동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열악한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로 수도권 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는 교육정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당면하고 있는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개막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중에 있습니다. 경북방문의 해 추진과 연계하여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없는지,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지원사업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볼 때라 생각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알찬 결실을 맺도록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각 중앙당 공약 사항에 우리도의 전략사업들을 많이 포함시키므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선거관련 지원업무에도 준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도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는 한편 공청회, 현장확인으로 지역여론 수렴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연수회 등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일부에서의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잘해 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 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 질 수 있는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라면서 도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Ⅰ. 개 황 ·····

Ⅱ.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위원회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위원회 ·····

Ⅳ.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공포 사항 ·····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Ⅵ. 5분 자유발언 ·····

부 록

□ 조례·규칙안 ·····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8회 임시회는 2007년 10월 4일 11:00 개회하여 10월 16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2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4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김종천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휴회기간인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규칙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소관 위원회별 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수용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 조례·규칙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17호 (2007년 9월 20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10월 4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10월 4일 ~ 10월 16일 (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 (누계 32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환경	농수산	통상문화	건설소방	예결특위
217회까지	260	16	42	36	39	35	30	41	21
218회	21	1	2	5	3	3	4	3	
누 계	281	17	44	41	42	38	34	44	21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10. 4(목) 11:00 (제1차)	1. 제2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5분 자유발언 ○ 김종천 의원 (통상문화)	
2007.10.16(화) 11:00 (제2차)	1. 5분 자유발언 ○ 김수용 의원(기획경제) 2.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12(금) 14:30 (제1차)	1.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용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안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5(금) (1일)	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영주, 봉화)	
2007. 10. 12(금) 11:00 (제1차)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4(목) 15:00 (제1차)	1. 자율방범연합회 임원단 간담회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10. 8(월) ~ 10. 10(수) (3일)	1. 현지확인 ○경북종합연수원 건립예정부지 (영덕군) ○삼척의료원, 강원도 공무원 설악수련원, 서울시 공무원 속초수련원(강원 삼척・속초)	
2007. 10. 16(화) 13:30(제2차)	1.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9(화) ~ 10. 10(수) (2일)	1. 현지확인 ○ 영어마을 견학(경기 안산・파주)	
2007. 10. 12(금) 11:00 (제1차)	1.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4(목) 14:00 (제1차)	1.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7. 10. 11(목) ~ 10. 12(금) (2 일)	1. 현지확인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봉화)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 (영주)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8(월) ~ 10. 10(수) (3일)	1. 현지확인 ○ 제88회 광주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광주) ○ 남해안 관광벨트조성사업 현장시찰(여수, 남해)	
2007. 10. 12(금) 11:00 (제1차)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7. 10. 4(목) 14:00 (제1차)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원안가결
2007. 10. 9(화) ~ 10. 10(수) (2일)	1. 현지확인(영양, 영덕, 경산) ○ 장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 산업체현장견학(주, 세안정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7 (126)	7 (126)	3 (99)	4 (27)				
조례안	소 계	6 (77)	6 (77)	2 (57)	4 (20)				
	의 회 제 안	3 (18)	3 (18)	1 (12)	2 (6)				
	도지사 제 출	2 (41)	2 (41)	(31)	2 (10)				
	교육감 제 출	1 (15)	1 (15)	1 (11)	(4)				
예산·결산		(12)	(12)	(5)	(7)				
동의·승인		(14)	(14)	(14)					
건 의 안		(4)	(4)	(4)					
결 의 안		(7)	(7)	(7)					
기 타 안		1 (12)	1 (12)	1 (12)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규칙	예산결산	동의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7 (132)	7 (126)	5 (76)	1 (1)	(12)	(14)	(4)	(7)	1 (12)	(4)		(2)
의회운영	2 (18)	2 (17)	1 (7)	1 (1)		(1)		(4)	(4)	(1)		
기획경제	(21)	(19)	(15)			(3)	(1)			(1)		(1)
행정보건복지	2 (23)	2 (22)	2 (18)			(4)						(1)
교육환경	1 (23)	1 (22)	1 (18)			(4)				(1)		
농수산	1 (8)	1 (8)	1 (5)				(2)	(1)				
통상문화	(7)	(6)	(1)			(2)	(1)	(2)		(1)		
건설소방	(11)	(11)	(11)									
특별	(12)	(12)		(12)	(12)							
본회의	1 (9)	1 (9)	(1)						1 (8)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2건〉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②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 (25)	(2)	(3)	(3)	1 (8)	(1)	(1)	(4)	(2)	(1)
의 회 운 영	(1)	(1)								
기 획 경 제	1 (3)			(2)			(1)			
행 정 보건복지	(2)	(1)	(1)							
교 육 환 경	(4)					(1)		(3)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4)		(2)	(1)				(1)		
건 설 소 방	4 (9)				1 (8)					(1)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25)	1 (25)				
의회운영	(1)	(1)				
기획경제	(3)	(3)				
행 정 보건복지	(2)	(2)				
교육환경	(4)	(4)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4)	(4)				
건설소방	1 (9)	1 (9)				
특별위원회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채옥주 의원 외 37명 (2007. 8. 28)	경상북도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7. 9. 3)
경상북도지사 (2007. 9. 20)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농 수 산 (2007. 9. 21)
경상북도교육감 (2007. 9. 20)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 (2007. 9. 21)
박진현 의원 외 15명 (2007. 9. 21)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 (2007. 9. 21)
박진현 의원 외 12명 (2007. 9. 21)	경상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회운영 (2007. 9. 21)

2. 조례공포 사항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비 고
2007. 9. 7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 9. 27
2007. 9. 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 9. 27
2007. 9. 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9. 27
2007. 9. 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9. 27
2007. 9. 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 9. 27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통상문화	2007. 9. 6	엑스포공원 문화센터	•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회식 및 축하공연
교육환경	2007. 9. 7	도청 제1회의실	• 동해안해양개발 추진상황 보고회
농 수 산	2007. 9. 4	구미 문화예술회관	• 다문화 한가족 큰사랑 대잔치
기획경제 교육환경	2007. 9. 17	도청강당	• 영어마을 조성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4. 기타 의정활동사항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상황보고회

- 일 시 : 2007. 8. 30(목) 11: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8. 30(목) 14:30
- 장 소 : 대전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9회 국민화합 전진대회

- 일 시 : 2007. 8. 31(금) 14:3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북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7. 9. 4(화) 11: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체화

- 일 시 : 2007. 9. 5(수) 10:30
- 장 소 : 포항 호미곶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2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

- 일 시 : 2007. 9. 5(수) 11:00
- 장 소 : EXCO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 일 시 : 2007. 9. 6(목) 19:00
- 장 소 : 엑스포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대구은행 사랑나눔 작은 음악회

- 일 시 : 2007. 9. 7(금) 19:00
- 장 소 : 월드컵경기장 수변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캄보디아 문화의 날 행사

- 일 시 : 2007. 9. 9(일) 11:00
- 장 소 : 엑스포공원내 백결공연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7. 9. 10(월) 15: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7. 9. 10(월) 15:30
- 장 소 : 김천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장대진 교육환경 위원장, 도의원

○ 해외통상 교류협력

- 일 시 : 2007. 9. 11(화) ~ 18(화) 8일간
- 장 소 : 두바이, 인도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현대모비스(주) 김천공장 기공식

- 일 시 : 2007. 9. 12(수) 14:00
- 장 소 : 김천2차산업단지
- 참 석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2007 경상북도 여성대회

- 일 시 : 2007. 9. 13(목) 10:30
- 장 소 : 엑스포공원내 백결공연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일본 오사카도민회 고향방문 환영연

- 일 시 : 2007. 9. 17(월) 19: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전용연구소 기공식

- 일 시 : 2007. 9. 18(화) 11:00
- 장 소 : 포항공대대학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7. 9. 18(화) 17:00
- 장 소 : 경주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 일 시 : 2007. 9. 19(수) 10:3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2007 내일을 여는 채용박람회

- 일 시 : 2007. 9. 19(수) 11:3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최윤희 통상문화부위원장

○ 혁신도시 기공식

- 일 시 : 2007. 9. 20(목) 14:30
- 장 소 : 김천시 남면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FTA대응 농업농촌 활력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 대회

- 일 시 : 2007. 9. 28(금) 10:30
- 장 소 : 엑스포공원 천마광장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도의원

○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9. 28(금) 14:30
- 장 소 : 강원도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 일 시 : 2007. 10. 1(월)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7. 10. 2(화) 11:00
- 장 소 : 상주 문화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Ⅵ. 5분 자유발언

□ 2007년 10월 4일(목) 제21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종천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영주시 출신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1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최근 신활력지역 선정과 선정된 지역의 대학수험생들이게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부터 읍면지역 농어촌 학생을 대입특별전형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최초에는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 모집토록 하였으나 현재는 정원외 4%까지 확대되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요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1기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경북의 상주시,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의 70개 시·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사실상 교육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11월1일 신활력지역을 농어촌지역을 분류해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여과 없이 각 대학에 통보함으로서 대학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제1기 신활력지역 도시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서 태백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 6개 시 지역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명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70개의 신활력지역 중에 6개 시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되고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여타 시는 도시로 분류된다는 것은 불평등한 교육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공주시, 제천시, 안동시, 영천시 등 6개 시가 새로 선정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공주시를 비롯한 제천시, 안동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주, 제천, 안동시가 영주시보다 낙후지역입니까?

제2기 신활력지역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소위 농어촌으로 분리되어 대입특별전형의 부가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면 경북 북부권 시중에서 유일하게 소외된 영주시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의 외지유출 사태가 빚어져 교육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시는 정치적 배려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번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배제되는 소외감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부터 특화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을 받아 국·도비의 지원없이 240억원의 자체재원을 인재육성을 위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방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에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며 이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히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과 무관한 신활력지역에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부와 각 대학이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면 특별전형 제도를 교육특구도시에도 마땅히 같이 적용하는 공평한 교육정책을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년 10월 16일(화) 제21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수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천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영천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신, 청솔아파트에 난데없이 인근 공단에서 쇳가루 분진이 날아와 주민들의 차량위로 낙진 하는 어처구니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여름에는 악취와 소음이 심하게 나서 지역주민들이 더운 여름날 아파트 창문을 열 수없는 상황에서 한여름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체대표, 주민대표, 영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공단과 아파트 경계지역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수변공원을 시 예산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장의 환기구와 배출구를 막고 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지역민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여 막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역민의 강력한 항의와 피해를 요구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이 해결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업체의 대표가 피해보상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공단 내에 다른 주철공장이 없는데도 자기공장에서 날아간 분진이 쇳가루라고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시스템과 뒷받침이 미비하기에 그 결과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현재 환경관계 업체의 권한 업무를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환경관련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권한은 개별법령 및 업무위임 조례 등으로 중앙정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대기배출의 경우 20톤 이상인 1, 2종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20톤 이하인 3, 4, 5종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입니다.

또한 소음, 진동 배출시설과 생활, 공사소음, 악취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지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 권한이고 지정외의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불필요한 지도와 점검 회수가 증가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기관별 인·허가 사항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잦은 규제 등으로 기업체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민에게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천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신, 청솔아파트에 쇳가루 분진과 악취, 소음을 발생시킨 태광주철의 경우 대기 폐수는 경상북도의 권한이고 소음, 진동, 일반폐기물, 악취 민원은 영천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동일업체 업무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인·허가 및 지도점검 민원을 전담하는 경우와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허가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통합 지도점검이 가능하여 기업체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효율적 행정운영 및 집행을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업체와 도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한 기업체에 이중 삼중의 지도점검, 관리감독, 인·허가의 불편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북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어내어 기업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되며, 법령상 상위법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규칙안 : 6건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

【조례·규칙안 : 6건】

□ 조례·규칙안 ·····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안

○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0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7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당해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각 의원은 최대 2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단체가 정하는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당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복수의 연구단체 회장을 맡을 수 없다.
④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의사담당관이 담당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의회운영위원장 1인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3인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고, 의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대한 가부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가부
4. 연구활동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지원팀의 입법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0월 16일

경상북도의회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신청)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변동사항 통보)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연구활동결과의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사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 하여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2. 회장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회장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체의 명칭 :

□ 변동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회 장					
회 원 (의 원)					

년 월 일

〔**통보인**〕 **회장**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단체의 명칭		
회장 성명		의원
심사 결과	심사 내용	
	연구 활동비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3">단체의 명칭</td><td></td></tr>
<tr><td rowspan="4">연구
내용</td><td rowspan="2">당 초</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 rowspan="2">변 경</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 colspan="3">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td><td></td></tr>
<tr><td colspan="3">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td><td>(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td></tr>
<tr><td rowspan="2">연구활동비</td><td colspan="2">총 액</td><td>금 원</td></tr>
<tr><td colspan="2">산출내역</td><td></td></tr>
<tr><td colspan="3">특기사항</td><td></td></tr>
</table>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 colspan="2">단체의 명칭</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연구내용</td><td>연구주제</td><td colspan="2"></td></tr>
<tr><td>연구목적</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연구활동비</td><td>수 령 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집 행 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잔 액</td><td colspan="2">금 원</td></tr>
<tr><td rowspan="4">집행내역</td><td>자료수집 및 조사비</td><td>금 원</td></tr>
<tr><td>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td><td>금 원</td></tr>
<tr><td>전문가 활용 경비</td><td>금 원</td></tr>
<tr><td>기 타</td><td>금 원</td></tr>
<tr><td colspan="2">특기사항</td><td colspan="2"></td></tr>
</table>

〔붙임〕 1.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3부
2.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	단체의 명칭	회원수	회장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등록취소일

경상북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0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군을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 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주체 등) 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본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9월 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 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 상담 또는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 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사용료” 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 120번지에 둔다.
2.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를 두고, 센터 내에 경상북도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와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두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290-3 번지에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관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도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의 건전육성 · 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2장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 등

제6조(사용허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되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이하 “수련센터” 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원장은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모 · 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제한) 수련센터의 사용자가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3장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 등

제1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단법인)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법인에 임원, 이사회, 사무기구, 직원을 두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 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연수
3. 도지사가 정하는 청소년보호 ·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법인은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법인의 운영경비는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과 정부 및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위촉직 이사는 청소년육성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3.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
4.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5.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6.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
7.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원장

④감사 2인 중 1인은 경상북도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회) ①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 임면) ①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단, 임명의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자격과 동모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①법인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련센터 원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청소년시설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8호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으로 본다.

【별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사용료

1. 청소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1박)	식비 (3식)	시설이용비 (1박2일)	수련지도비 (1박2일)	합 계 (1박3식)
초등학생	4,400	9,600	1,500	1,500	17,000
중 학 생	4,700	10,200	1,600	1,500	18,000
고등학생	5,300	10,500	1,700	1,500	19,000
대 학 생	5,800	10,800	1,900	1,500	20,000

주) 1. 초등학생 미만은 초등학생 요율을, 그 이외의 청소년은 대학생 요율을 적용한다.
2. 식비와 수련지도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비는 1식당 요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청소년 이외의 자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적용기준	금 액	비 고
숙박비		1박(8인실)/1실	50,000	
		1박(20인실)/1실	100,000	
식 비		1식/1인	4,500	
시설이용비	강당	4시간까지	100,000	
		초과시간당	20,000	
	강의실	4시간까지	30,000	
		초과시간당	10,000	
	운동장	4시간까지	100,000	
		초과시간당	10,000	
장비이용비	MTB	4시간/1대	6,000	
		초과시간당	2,000	
	빔프로젝터	4시간/1대	10,000	
		초과시간당	5,000	
프로그램이용비	챌린지코스	4시간/1인	20,000	
	수상훈련	4시간/1인	20,000	
	서바이벌게임	1회/1인	10,000	
	캠프파이어	재료비/1회	70,000	
		폭죽/1개	40,000	

주) 1. 숙박비의 1박은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2. 강당과 강의실을 냉난방하는 경우와 운동장을 야간조명하는 경우에는 요율의 20%를 가산한다.
3. 강당·강의실 이외 건물내부시설은 강의실 요율을 적용하고, 운동장 이외 건물외부시설은 운동장 요율을 적용한다.
4. 프로그램 이용은 종목별로 50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0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 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신설〉 ② 생략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 **다만,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현행과 같음)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10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내외 농어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범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 농어업 실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경상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어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농어업인의 의료·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도의 농수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농촌인력양성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하는 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촌인력양성분과위원회,농수산연구개발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전문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육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장, 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 전문연구위원, 소속 직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총괄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7. 11. 14(수)~11. 23(금) : 10일간

3. 감사대상

가. 대상기관 및 현지확인

구분 /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계	본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계	67	14	53	4
의회운영	1		○ 의회사무처	
기획경제	11	○ 공보관실 ○ 새경북기획단 ○ 기획조정본부 ○ 경제과학진흥본부	○ 지방공무원교육원 ○ 경상북도개발공사 ○ 경북교통연수원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영천청통골프장 조성현장
행정보건복지	9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 행정지원국	○ 경도대학 ○ 자연환경연수원 ○ 노인전문간호센터 ○ 포항의료원 ○ 김천의료원 ○ 안동의료원	

구 분 / 위원회별	감 사 대 상 기 관			현 지 확 인
	계	본 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환경	17	○ 환경해양산림국 ○ 도 교육청 (직속기관포함)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포함)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소득개발원 ○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 시군교육청(11개소)	
농 수 산	5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하부조직 포함) ○ 축산기술연구소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북부·동부·서부지소)	
통상문화	5	○ 투자통상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경상북도체육회 ○ 경상북도생활체육협의회	
건설소방	19	○ 건설도시방재국 ○ 소방본부	○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포함) ○ 소방학교 ○ 시군소방서(15개소)	○ 옥성~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 오계·옹암지구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나. 감사위원회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위원장 :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 감사 위원 : 박순범, 김만용, 김수용, 김영만, 박기진, 박병훈, 박순열, 박진현 손진영, 이상태, 이종원, 장두욱, 최윤희, 한혜련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주근호, 지방행정주사 정철화,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아, 속기사

□ 기획경제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감사 위원 : 박진현, 김수용, 나규택, 손덕임, 안순덕, 이상용, 이상태, 정경구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재석, 지방행정사무관 박태룡, 지방행정주사 장상열, 지방행정주사보 유명근, 속기사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감사 위원 : 손진영, 권영만, 김숙향, 김응규, 박순범, 윤영식, 윤창욱, 이시하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황용대, 지방계약직 가급 조영진, 지방행정주사 이용구, 지방행정주사보 구본석, 속기사

□ 교육환경위원회

○ 감사위원장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감사 위원 : 박순열, 김만용, 김영기, 백천봉, 송필각, 장세헌, 전찬걸, 채옥주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정병철, 지방계약직 가급 문도연, 지방행정주사 정중태, 지방행정주사보 권기영, 속기사

□ **농수산위원회**

○ 감사위원장 :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 감사 위원 : 이종원, 김영만, 남종식, 박노욱, 박병훈, 이용석, 조동만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박만식, 지방농업사무관 김준식, 지방행정주사 서윤석, 지방행정주사보 김영균, 속기사

□ **통상문화위원회**

○ 감사위원장 :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
○ 감사 위원 : 최윤희, 김종천, 방대선, 백영학, 이재철, 장경식, 정무웅, 한혜련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송용배, 지방행정사무관 김세환, 지방행정주사 송대성, 지방행정주사보 안경호, 속기사

□ **건설소방위원회**

○ 감사위원장 : 황상조 건설소방위원장
○ 감사 위원 : 박기진, 고우현, 김기홍, 김영택, 박영화, 장길화, 장두욱, 장병익 위원
○ 사무보조(의회 직원)
- 전문위원 김이찬, 지방계약직 가급 강창모, 지방행정주사 김동배, 지방행정주사보 권태억, 속기사

다. 주요 감사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의회운영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2007년도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08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기획경제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주요시책 업무 추진사항 ○2006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7년도 예산집행 상황 ○2008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행 정 보건복지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주요시책 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2007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교육환경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경상북도〉 ○2007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6~2007년도 상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007년도 민원처리현황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구 분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교육환경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시군교육청〉 ○2007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06~2007년도 상부기관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2007년도 민원처리현황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농 수 산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7년도 예산집행 사항 및 미집행 사항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문화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미집행 사항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건설소방 행정사무 감사위원회	○2006, 2007년도 주요시책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 ○2006,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라. 제출할 서류

(1) 업무보고서

(2) 감사자료

〈경상북도〉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요구사항	비고
합 계		92	1,028	
의회운영	소 계		7	
기획경제	소 계	14	182	
	공보관실		14	
	새경북기획단		10	
	기획조정본부		56	
	경제과학진흥본부		63	
	지방공무원교육원		17	
	경상북도개발공사		22	
행 정 보건복지	소 계	22	268	
	감사관실		15	
	행정지원국		80	
	보건복지여성국		74	
	경도대학		31	
	자연환경연수원		15	
	노인전문간호센터		12	
	의료원 (포항・김천・안동)		41	
교육환경	소 계	11	78	
	환경해양산림국		53	
	보건환경연구원		8	
	산림환경연구소		6	
	산림소득개발원		6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5	
농 수 산	소 계	14	200	
	농수산국		140	
	농업기술원		60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요구사항	비고
통상문화	소 계	11	95	
	투자통상본부		42	
	문화체육관광국		53	
건설소방	소 계	20	198	
	건설도시방재국		121	
	종합건설사업소		22	
	소방본부		55	

〈경상북도교육청(직속기관)〉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공통사항	부서개별요구사항	비고
교육환경	계	5	94	
	공통사항(본청,직속기관)	5		
	본청		45	
	경상북도교육연구원		4	
	경상북도과학교육원		3	
	경상북도교육연수원		3	
	화랑교육원		3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5	
	경상북도립도서관 (안동,구미,상주)		5	
	시군교육청(공통)		26	

※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붙임

(3) 작성방법

○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수감준비를 하여야 함.

○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국 단위로 편철 후 2007년 11월 2일(금)까지 소관상임위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작성기준일을 따로 지정하였거나 10월31일 현재로 작성이 곤란한 자료는 작성 기준일을 별도로 표시를 요함

○ 제출되는 감사자료의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위원회별 25부씩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도 동일 방법임.

○ 감사대상 기관별로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별책 작성

○「업무보고」에 포함될 도정보고 내용은 감사대상 기관별로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 기타 특수시책 추진현황 등을 기본으로 “위원회별 주요감사 사항”의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타부서 소관은 후단에 포함.

라. 위원회별 감사계획 : 별첨

감사요령 및 협조사항

1. 감사 진행 순서

가. “감사 선언”의 선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기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감사선언을 선포함.

※ 감사는 회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 선언을 선포하는 것임.

나. 위원장 인사

○ 먼저 “감사 선언”을 한 후에 상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게 됨.

○ 의사일정은 “2007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상정

다. 증인 선서

○ 선서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함.

○ 선서 요령

- 상임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별첨 양식)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든다.
-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지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

감사에 참여하는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증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라. 기관장 인사 및 보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해당기관 또는 부서의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함.

마. 질의·답변

○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해당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형식인데, 이 경우에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이 결국「질의·답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 방 법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출석증인의 답변시에 질의시간과 진행방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 질의·답변식)에 대한 결정은 당해 위원회에서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바. 현지 확인

○ 현지 확인의 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현장 또는 현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또는 현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지 확인의 과정이며, 현지 확인 활동은「검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감사위원 중 일부 위원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도 있음.

○ 현지 확인의 진행순서

현지 확인을 하는 데는 정형화된 진행순서는 없으나 대체로

① 개회

② 위원장 인사

③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보고

④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⑤ 제출서류 실태 파악(필요한 서류 봉인)

⑥ 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함

사.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강평의 의의

감사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면 위원장은 간단하게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당부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함.

○ 종료 선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끝나면 「이상으로 ○○기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당해 기관의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함

2. 현지확인 협조

가. 감사장 설치

○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로 통보받은 즉시 감사위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수감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감사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소방위원회 수감대상기관(부서)에서는 현지확인시에 설계도, 시방서, 코아채취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 상임위원회별「좌석 배치도」에 따라 감사위원의 좌석, 전문위원좌석, 속기사의 속기를 위한 좌석을 배치하되 해당 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속기록 작성 준비

○ 속기석은 속기사의 교대가 가능하도록 2개 좌석을 배치하고,

○ 속기석에는 속기 기록 청취용「헤드폰」을 설치하고

○ 감사장에는 감사과정의 모든 질의·답변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와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 기타 속기사로부터 속기에 필요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다. 감사장 안내

○ 감사장소의 안내는 수감기관의 해당부서에서 담당하여 감사 당일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

라. 현지 이동에 따른 차량지원

현지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가능한 의회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으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여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감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사무감사 사항의 기록 및 홍보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별 모든 감사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존할 사항과 함께 홍보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본 감사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기관 등에서 조치.

3. 감사실시 결과보고 협조 - 의회 각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12. 6 (목)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 ○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부서)
- ○ 감사실시 결과
- ○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방법
- ○ 주요 감사실시 내용(소관별, 사항별)
- ○ 감사결과 처리 의견
-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 ○ 처리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 건의사항(건의나 희망사항)
- ○ 주요 근거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첨 요함
- ○ 기타 특기사항

4. 증인출석 요구

가. 증인출석요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출석을 요구

나.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

출석증인의 대상은 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와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함.

다. 증인의 출석통지 및 증인 의무

(1) 해당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

감사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 명의로 출석 해당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증인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

(2) 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대상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야 함.

라. 증인 출석 불가이유서 제출

의회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석할 수 없는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증인의 보호

증인, 참고인은 증언 또는 진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시는 감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증인출석요구 내역

(1)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의회운영 감사위원회 (15인)	11. 23(금) 14:00	○ 의회사무처 (운영위회의실)	○ 의회사무처장 ○ 총무담당관 ○ 의사담당관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2)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기획경제 감사위원회 (9인)	11.14(수) 11:00	○ 공보관실 (상임위회의실)	○ 공보관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 공무원교육원 (수감기관)	○ 원장, 과장	
	11.15(목) 11:00	○ 새경북기획단 (상임위회의실)	○ 단장	
		○ 경북교통연수원 (수감기관)	○ 원장, 관리과장	
	11.16(금) 10:30	○ 경상북도개발공사 (수감기관) ※ 영천청통골프장조성현장	○ 사장, 상임이사, 실장	
	11.19(월) 11:00	○ 기획조정본부 (상임위회의실)	○ 본부장,정책기획관, 각팀장,서울사무소장	
	11.20(화) 11:00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수감기관)	○ 원장,부장	
	11.21(수) 11:00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수감기관)	○ 원장,실장 ○ 원장,실장 ○ 소장,부장	
	11.22(목) 11:00	○ 경제과학진흥본부 (상임위회의실)	○ 본부장,각 팀장	
	11.23(금)	○ 감사결과 정리		

(3)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행정보건복지 감사위원회 (9인)	11.14(수) 11:00	○ 행정지원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15(목) 11:00	○ 감사관실 ○ 보건복지여성국 (상임위회의실)	○ 감사관 ○ 국장, 과장	
	11.16(금) 11:00	○ 포항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과장	
	11.17 - 11.18	휴 무		
	11.19(월) 11:00	○ 안동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과장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20(화) 11:00	○ 김천의료원 (동 의료원)	○ 원장, 과장	
	11.21(수) 11:00	○ 자연환경연수원 (동 연수원)	○ 원장	
	11.22(목) 11:00	○ 도립경도대학 (동 대학)	○ 학장, 과장	
	11.23(금) 11:00	○ 노인전문간호센터 (수감기관)	○ 센터장	

(4) 교육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교육환경 감사위원회 (9인)	11.14(수) 11:00	○ 환경해양산림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자료제출 등
	11.15(목) 11:00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소득개발원 ○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회의실)	○ 소장,지소장 ○ 원장 ○ 소장 ○ 원장, 부장, 지원장	
	11.16(금) 11:00	○ 도 교육청 (직속기관포함) (상임위회의실)	○ 부교육감,국장, 담당관,과장, 원장,관장	
	11.19(월) 11:00	○ 안동・문경・ 예천・의성교육청 (의성교육청)	○ 교육장	
	11.20(화) 11:00	○ 김천・구미・ 상주교육청 (구미교육청)	○ 교육장	
	11.21(수) 11:00	○ 경주・영천・ 경산・청도교육청 (청도교육청)	○ 교육장	
	11.22(목) 11:00	○ 도 교육청 (직속기관포함) (상임위회의실)	○ 부교육감,국장, 담당관,과장, 원장,관장	
	11.23(금)	○ 감사결과 정리		

(5)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농수산위원회 (8인)	11.14(수) 11:00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포함) ○ 원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시험장장	○ 업무현황보고
	11.15(목) 11:00	○ 가축위생시험소(본소) (동 사업소)	○ 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구미화훼시험장 (동 시험장)	○ 장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6(금) 11:00	○ 경영정보연구소 (동 사업소)	○ 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동 사업소)	○ 지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9(월) 11:00	○ 생물자원연구소 (동 연구소)	○ 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 풍기인삼시험장 (동 시험장)	○ 시험장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20(화)	휴 회		
	11.21(수) 11:00	○ 농수산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포함)	○ 질의·답변
	11.22(목) 11:00	○ 농업기술원 (상임위회의실)	○ 원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 시험장장	○ 질의·답변
	11.23(금) 11:00			○ 감사결과정리

(6) 통상문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통상문화 감사위원회 (9인)	11.14(수) 11:00	○ 투자통상본부 (상임위회의실)	○ 본부장,팀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5(목) 11:00	○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단장, 과장	
	11.16(금) 11:00	○ 경상북도체육회 (수감기관)	○ 사무처장, 사무차장, 총무팀장, 운영팀장, 훈련팀장	
	11.16(금) 15:00	○ 경상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수감기관)	○ 사무처장, 운영부장, 총무과장, 사업과장, 지도과장	
	11.19(월) 11:00	○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수감기관)	○ 원장, 사무처장, 조사단장, 행정관리실장, 조사연구실장	
	11.20(화) ~11.23(금)	○ 감사결과 정리		

(7)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구 분	출석요구일시	감사대상기관 (출석장소)	출석요구 증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건설소방 감사위원회 (9인)	11.14(수) 11:00	○ 구미소방서 (동 소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옥성~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현지확인)		
	11.15(목) 11:00	○ 영주소방서 (동 서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오계·옹암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현지확인)		
	11.16(금) 10:30	○ 울진소방서 (동 소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19(월) 11:00	○ 김천소방서 (동 소방서)	○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 태화지구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현지확인)		
	11.20(화) 11:00	○ 종합건설사업소 (동 사업소)	○ 소장, 북부지소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21(수) 11:00	○ 소방본부 (상임위회의실)	○ 본부장, 과장, 소방서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22(목) 11:00	○ 건설도시방재국 (상임위회의실)	○ 국장, 과장	○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자료제출 등
	11.23(금)	○ 감사결과 정리		

선　　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 ○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국,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월　　일

기관명 :

○○○장　　○　○　○　　(인)

(별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별 감사일정표

일자 / 감사 위원회	11.14(수)		11.15(목)		11.16(금)		11.19(월)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의회운영								
기획경제	· 공보관실 · 공무원교육원 (11:00~)	· 상임위회의실 · 수감기관	· 새경북기획단 · 경북교통연수원 (11:00~)	· 상임위회의실 · 수감기관	· 경북개발공사 (10: 30~)	· 수감기관	· 기획조정본부 (11:00~)	· 상임위 회의실
					· 영천청통골프장 조성현장			
행 정 보건복지	· 행정지원국 (11:00~)	· 상임위회의실	· 감사관실, 보건복지 여성국 (11:00~)	· 상임위 회의실	· 포항의료원 (11:00~)	· 수감기관	· 안동의료원 (11:00~)	· 수감기관
교육환경	· 환경해양산림국 (11:00~)	· 상임위회의실	· 산림환경연구소 · 산림소득개발원 · 팔공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 · 보건환경연구원 (11:00~)	· 상임위 회의실	· 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11:00~)	· 상임위 회의실	· 안동·문경·예천· 의성교육청 (11: 00~)	· 의성교육청
농 수 산	· 농수산국 · 농업기술원 (11:00~)	· 상임위회의실	· 가축위생시험소(본소) · 구미화훼시험장 (11:00~)	· 수감기관	· 경영정보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11:00~)	· 수감기관	· 생물자원연구소 · 풍기인삼시험장 (11:00~)	· 수감기관
통상문화	· 투자통상본부 (11:00~)	· 상임위회의실	· 문화체육관광국 (11:00~)	· 상임위 회의실	· 경상북도체육회 (11:00~) · 경북생활체육협의회 (15:00~)	· 수감기관	·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00~)	· 수감기관
건설소방	· 구미소방서 (11:00~)	· 수감기관	· 영주소방서 (11: 00~)	· 수감기관	· 울진소방서 (10:30~)	· 수감기관	· 김천소방서 (11:00~)	· 수감기관
	· 옥성~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지확인(구미)		· 오계·옹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지확인(영주)				· 태화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지확인(김천)	

일자 / 감사위원회	11.20(화)		11.21(수)		11.22(목)		11. 23(금)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대상기관	장 소
의회운영							· 의회사무처 (14:00~)	· 상임위 회의실
기획경제	·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11:00~)	· 수감기관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11:00~)	· 수감기관	· 경제과학진흥본부 (11:00~)	· 상임위회의실	· 감사결과 정리	
행 정 보건복지	· 김천의료원 (11:00~)	· 수감기관	· 자연환경연수원 (11:00~)	· 수감기관	· 도립경도대학 (11:00~)	· 수감기관	· 노인전문간호 센터(11:00~)	· 수감기관
교육환경	· 김천·구미·상주 교육청 (11:00~)	· 구미교육청	· 경주·영천·경산· 청도교육청 (11:00~)	· 청도교육청	· 도 교육청 (11:00~)	· 상임위회의실	· 감사결과 정리	
농 수 산	휴 회		· 농수산국 (11:00~)	· 상임위회의실	· 농업기술원 (11:00~)	· 상임위회의실	· 감사결과 정리	
통상문화	감사 결과 정리							
건설소방	·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포함) (11:00~)	· 수감기관	· 소방본부 (11:00~)	· 상임위회의실	· 건설도시방제국 (11:00~)	· 상임위회의실	· 감사결과 정리	

의정활동보고서(제218회 임시회)

2007. 11 인쇄 / 2007.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